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시직원 공개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시직원 공개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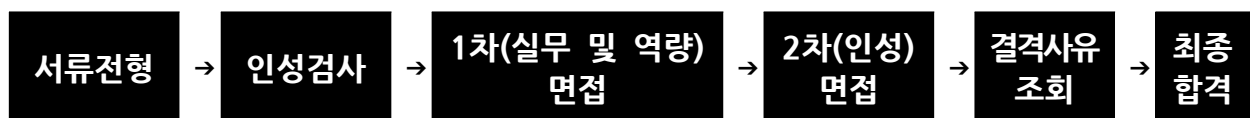
1. 채용 분야 · 인원 및 주요업무

분 야	직 급	채용인원	주 요 업 무
Jespi 영업	임시계약직 (기술직 6급 상당)	1	◦ Jespi 영업장 운영

2. 자격요건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만59세 미만인 자
- 외식업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우리공사 인재상에 부합되는 분 (인성 / 창조성 / 전문성 / Globality)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 군필자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영업장 운영에 따라 주말 및 야간 근무 가능한 분

3. 전형절차



- 서류 전형 합격자 및 인성검사 적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자격 부여
 - 인성 검사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진행
- 1차 면접 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자격 부여

4. 보수 수준 : 공사 규정에 따름.

5. 전형일정

구 분	주요 일정	비 고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	6/18 ~ 6/29	홈페이지, 클린아이 공고
서류 심사	6/29	
인성 검사	7/1 (예정)	
1차 면접	7/5 (예정)	
2차 면접	7/8 (예정)	

※ 상기 일정은 접수인원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함.

6.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15. 6. 18(목) ~ 6. 29 (월) 14:00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인정 (원서접수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695-9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총무팀
 - 토·일요일은 원서접수 불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우리공사 소정양식 기재)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e-mail 기재 필수)
 - 직무수행 계획서
 - 경력기술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경력증명서
 - ※ 경력증명서 근무기간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의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상의 근무기간을 적용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자격증 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 (병역사항 포함)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자격증 제외), 추후 증빙서류에 대해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공사 규정에 따라 합격 취소한 날로부터 5년간 모든 직종 응시 제한.

8. 기타사항

-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내 일정기간(최소 6개월) 경과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가능
- 해당 분야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순으로 임용여부 결정 가능
- 공사 사정에 따라 임용시 또는 발령시 근무부서 변경 가능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인정 (원서접수일 내 도착분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보훈자녀)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면접(1차)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경우 우대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시 반환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총무팀(☎064-780-3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